

문서번호	기획예산과-2588	주무관	기획조정팀장	기획예산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결재일자	2016.2.18.	백점숙	이택모	조상연	이상형	하철승	02/18 박경수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협 조					
보도여부							



「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」 의결(안) 상정

2016.2.16.

강 북 구
(기획예산과)

「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」 의결(안) 상정

서울특별시 동북4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「동북4구 행정협의회」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규약(안)을 구의회 상정하여 의결을 거치고자 함

I 큰 거

- **지방자치법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**
 -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- **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(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)~제99조(회의)**

II 추진경과

- 「동북4구 행정협의회」 설립 제안: 2015.11.18.
 - 서울 성북구, 강북구, 도봉구, 노원구청장 간담회 시(성북구 주관)
- 「동북4구 행정협의회」 설립 계획(안) 협의: 2016. 1. 5. ~ 1.10.
 - 운영규약(안) 및 임원 구성, 향후 추진사항 등 협의(노원구 주관)
- 「동북4구 행정협의회」 규약(안) 합의: 2016. 1. 13.
 - 「동북4구 행정협의회」 실무협의 결과 안내(노원구 기획예산과-495(2016. 1.13.))

Ⅲ 주요 내용(규약(안))

- 명 칭: 「동북4구 행정협의회」
- 구 성: 동북4구(성북구, 강북구, 도봉구, 노원구) 자치단체장
 - 회장은 최초 정기회의 때 위원중에서 호선, 임기 1년이며 윤번제 실시
- 조 직
 -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운영
 - 협 의 회: 중요사항 협의·결정
 - 실무협의회: 실질적 업무협의 및 업무수행(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)
 -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매년 분기별 1회 정기회 개최
 -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, 협의회 업무담당을 서기로 둠
- 협의·결정사항(기능)
 -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정책의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
 -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
 - 동북4구 권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
 - 동북4구의 분야별 공동발전 방안에 대한 협의
 - 동북4구 상호간 자료, 정보, 기술, 교환
 -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협의방법
 - 안건의 합의는 위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함
- 경비부담
 - 협의회 공동사무처리,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(년 5백만원 정도)

IV 협의회 규약 의결(안) 상정

- 상정시기: 제19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(2016. 3. 8. ~ 3.18.)
- 내 용: 「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」 의결(안) 상정

V 향후 추진일정

- 2016. 3.: 「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」 고시 및 창립총회
- 2016. 4.: 「동북4구 행정협의회」 구성 보고(서울시)

붙 임 :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(안) 및 관련법령 1부. 끝.